

사회복지학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02.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 학칙 제31조의4(현장실습)에 의거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1), 사회복지현장실습(2)의 교과목 학점취득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습의 구분) 사회복지기관실습은 정규학기에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교과목 개설 직전 방학 중 실시하는 학기 외 기관실습으로 구분한다.

제4조(실습기관 및 시기) ① 실습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실습 기관 일지라도 실습 지도교수가 실습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실습 기관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실습 시기는 실습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실습시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과목 이수 시점별로 120시간 ~ 1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지도교수) 학과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도교수 인원과 그 지도 학생 인원을 정한다.

제7조(학점취득) 지도교수는 기관실습(학기 외 기관실습 포함)과 실습세미나 교육 이수 학기에 학점을 부여한다.

제8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교과목 운영과 관리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학칙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교과목 수강 신청 없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기관실습을 미리 실시한 사람이 이 법령 시행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교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